

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

의안 번호	144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6년 10월 31일

제출자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- 공립 각급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 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를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,
-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·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과 체험학습 공간 제공으로 살아있는 에너지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,
-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임

2. 관련법령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, 제22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, 제12조
- 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4조, 제26조
- 「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15-256호」 (2015.12.16.)
 - 2016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공고

3. 사업개요

가. 추진방식 : 협동조합형

나. 시설형태 : 태양전지 모듈, 인버터, 구조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시설

다. 건물현황 및 시행자

순	학교명	건물명	건축연도 (건물연령)	건물 등급	옥상면적 (m ²)	시행자
1	금산초	본관동	1998 (18년)	A	1,279	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

라. 사업내역

(단위 : 천원)

학교명	건물명	설치면적 (m ²)	발전용량 (kW)	연간발전량 (kWh)	건설비	연간 사용료
금산초	본관동	219.66	34.32	40,000	65,200	1,029

마. 사용·수익허가 조건

- 사용료 : 금1,029,600원(30,000원×34.32kW=1,029,600원)
- 허가기간은 10년(10년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1회 연장 여부 결정)
- 사용 종료 후 영구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. 단, 사업기간 내 매각이나 대수선 등의 대상이 된 경우 영구시설물 즉시 철거 및 시설물 철거비용 예치 조건
 - ※ 사업종료 시 계속 사용이 철거보다 교육 및 경제적으로 유익할 경우 철거비용 예치 없이 기부채납 예정

바. 건물 구조검토, 설계, 건설, 학생안전시설 등 소요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
 사. 하자보수기간은 사용허가 기간과 같음

4. 기대효과

- 친환경에너지 체험학습 공간 활용을 통한 에너지 및 환경 교육 효과 제고
- 「원전하나 줄이기」 및 「블랙아웃 방지」 일조
- 햇빛발전소 구조물의 여름철 그늘 효과로 건물의 온도 강하

5. 향후계획

- 사용허가 신청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(사업자 ↔ 학교)
- 전기사업자(태양광 발전사업) 허가 (사업자→서울시)
- 공사 착공 및 준공(사업자)

- 붙임 1.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배치도면 및 현황사진 1부.
 2. 관련법령(발췌) 1부.

【붙임1】

금산초등학교 햇빛발전소 배치도면, 현황사진



배치도면



현황사진

※ 설치용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【붙임2】

관 련 법 령

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】

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(隨意契約)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"임대"라 한다)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이하 생략
-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】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~ ④ 생략

⑤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

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】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
2.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·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
3.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.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.
4. 이하 생략

제12조(사용·수익허가)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
2.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[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]

제4조(영구시설물의 축조) 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9조 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: 교육지원청 교육장(이하 "교육장"이라 한다)
2. 교육지원청·직속기관,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: 교육감

②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·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학교는 미리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.
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⑦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대부요율을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.

< 2016년 사용료(대부료) 공고 >

적용기간	사용료 및 대부료(단위: kW·년)
2016년	○ 설비용량 100kW 초과 : 35,000원 ○ 설비용량 100kW 이하 : 30,000원

※ 설비용량(kW)은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사용료 및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.

[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]

제6조(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.

9.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
15. 소관재산중 공작물, 입목죽, 무체재산의 취득·처분 및 용도폐지